

제 호

진폐전문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 (부속연구기관명 :)
2. 소재지:
3. 대표자:

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고용노동부장관

직인

변경사항					
연월일	내용	확인	연월일	내용	확인